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85
----------	------

발의연월일 : 2024. 12. 24.
발의자 : 문금주 · 한민수 · 강준현
문정복 · 이병진 · 이정문
이연희 · 김영배 · 김원이
조인철 · 조계원 · 박홍배
박해철 · 주철현 · 정진욱
김우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